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56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9일 이정인의원 발의
2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3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4월22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나. 주요내용

-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(안 제4조의3 신설).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규 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- 3)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

- 시장이 장애인 보조기기의 구매·대여·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시장이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는 내용임 (안 제4조의3)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3(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)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나. 집행부 의견

- 집행부에서는(장애인복지정책과)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의견 반영 절차는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에 원안 동의하였음.

3 종합 검토 의견

- 시장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보조기기 이용자 의견 반영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집행부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입법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개정 실익이 있음.
- 또한, 보조기기 이용자 의견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5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 이정인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경우, 이영실, 전석기,
오현정, 이병도, 문장길,
노승재, 이태성, 김 경,
홍성룡, 박순규, 한기영,
김화숙, 문병훈, 송아량,
이은주, 채유미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골자

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(안 제4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)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4조의3(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)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